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3

발의연월일: 2020. 8. 4.

발 의 자:백혜련・이형석・강선우

박영순 · 전혜숙 · 맹성규

김경만 · 신정훈 · 양이원영

이탄희 · 정성호 · 양경숙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로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부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을 일시 전액 납부만 가능하여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 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
	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
	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
	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
	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
	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
	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
	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
	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
	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u>수 있다.</u>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

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